

〈논문〉

##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河在洪\*\*

### 요 약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법학교육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치부되고 법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것만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적지 않은 좌절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로스쿨 대비 정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하였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전제로 그의 주변 교육기관화 하려는 것은 학부법과대학이 지금껏 이루어온 인적·물적 자원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또는 로스쿨 대비반안은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다.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교과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수법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 내지 대외활동, 겸직봉사 등 교육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것, 법률상담실이나 토론동아리, 학생학술지 편찬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법과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의 교원이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주제어: 법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법, 법률상담실, 토론동아리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 글은 2009. 10. 30.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교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변호사.

## I. 문제제기

대략 2008년까지 사법개혁, 특히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개원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법조인력 양성 및 법학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여러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지 못한 문제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해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개방화,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및 공급방식’에 대한 기대<sup>1)</sup> 속에 보완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전국 상당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이하 ‘학부법과대학’이라 지칭한다)의 위상과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확실히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학부법과대학은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 체제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결과 이미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단적인 것이 학부법과대학의 의의나 존립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움직임이다.

이 글에서는 학부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우리나라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져 온 법학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의의와 예상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동시에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여전히 미해결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부법과대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부법과대학의 운명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전부터 이른바 프리-로스쿨안, 공무원시험대비반안 등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프리-로스쿨안 등은 학부법과대학에 기대되는 시대적 사명에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심리적 좌절감에 위축된 방안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국내 각 학부법과대학들의 목표지향이나 규모, 기타 여건이 서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모든 학부법과대학에 보편타당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학부법과대학이 단순한 교양법학교육기관 이상의 위상을 계속 가져야 한다면,<sup>2)</sup> 학부법과대학이 법학교육기관으

1)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참조.

2) 미국의 경우 로스쿨 체제에서도 학부 수준에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로서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어진 사회적

‘로스쿨이 자리잡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나름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부법학교육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부법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완전히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학부법학교육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논의는,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이미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성급한 판단 내지는 논리적 오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근처에는 고등법학교육 기관으로서의 학부법과대학의 위상을 부정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듯이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학부법과대학이 종전까지 담당하여 오던 법학교육의 가치나 필요성을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학부법과대학들 중에는 현재와 같은 정도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곳도 여럿 있을 뿐 아니라, 법학교육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3류 대학, 3류 교수라는 근거 없는 평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교양법학교육기관이 아니면, ‘경찰관과 교도관 양성을 목표로 형사법 중심의 커리큘럼이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인문학으로서의 법학을 가르치는 경우’를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법학교육의 주체인 학부법과대학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려고 하는 대학당국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어떠한 역사적인 정당성이나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 종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전에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성토했던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음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시작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되는 법학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나 교육의 성과에 있어서나 확실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의 문제들에 대해 외면 내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학부법과대학의 발전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점하고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영역에서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제도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여 논의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 글이 과거 법학교육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문제들을 계속 화두로 삼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글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여도, 현재까지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학부법과대학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기왕의 논의 성과를 기초로 정당한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지적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현재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이 성공한 것 마냥 성급한 판단에 취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이나, 미래를 빼앗긴 학부법과대학에 드리워진 좌절을 타파할 수 있다면 이 글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 글에서는 그동안 법학교육의 개선에 관한 주장들을 가능하다면 충분히 소개하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주장을 일견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법학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문제들 앞에 정직해지고 또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뜻에서, 또 이제 다시 현재까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얼마나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충분한 필요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우 학부법과대학의 발전방안이라는 것은 먼저 각 대학의 법학교육기관과 구성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법학교육 담당자들의 의사가 중합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발전방안이라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법과대학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을 다시 정립하고, 학부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법과대학은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 II.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

### 1.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 이전의 법학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과거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실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그 대체적인 논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sup>3)</sup> 먼저 문제점으로 사법시험에 자격제한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법시험에 도전하면 그것으로 입신양명을 이룰 수 있기에 대학생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고, 대학은 공동화(空洞化)되거나, 사법시험 준비학원으로 전락하였다. 그리하여 사법시험과목이 아닌 교과는 외면당하고, 사법시험과목인 교과는 수입 법이론과 판례 지식의 암기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그 결과 법과대학은 법적 소양이 없는 법률기술자를 양산할 뿐,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법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였다.<sup>4)</sup> 법학교육은 외형적으로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비판정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 정의감,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도록 하지 못하였고, 법학교과 내에서도 균형 있는 교육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3) 김창록 외 4, “부산대학교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1권 제1호(2000), 486-488면 등 참조.

4)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36-37면.

5) 최대권, “학부교육과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1996), 85-86면. 그 외 정중섭은 ① 현실의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② 법률교육의 수요자측면이 아닌 공급자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과 과목이기주의 내지 할거주의로 졸업 후 학생 진로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③ 법률전문가에 대한 계속교

개선방안으로는 여러 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소위 ‘로스쿨’ 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주종을 이루다시피 하였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과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 그 사실만으로써 법학교육이 정상화되었다는 희망을 가져도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희망은 검증된 바 없다. 송상현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전에 이를 지적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지향하는 대학은 우수교원의 양성과 교원용 매뉴얼 개발,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명확한 토론 및 논리전개, 사례분석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 개발, 교재편찬과 강의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해 점검과 의견교환을 정례화하는 등의 기반을 갖추는 것 등의 기초적인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종전 법대를 운영하던 방식 내지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한다면 예산낭비와 혼란에 허우적거릴 것이라 지적한다.<sup>6)</sup> 이 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로 법학교육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소된 것인 양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상의 허점을 분명하게 경고한 점에서 가치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으나,<sup>7)</sup>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교수방법론 부분은 외국의 사례와 현

육이나 임상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배중대는 ①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의 괴리 - 법학교육과정의 사법시험 위주의 해석론에 치우쳐 있어서 실무에 대한 연계가 매우 희박하다. ② 교육의 전문성 결여 - 내용과 운용에서 부실한 일반교양교육과 한정된 사법시험과목에 집중된 전공과목의 교육으로는 전인적인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 ③ 고급인력의 낭비와 비생산성 - 한해 법과대학 졸업생 중 4% 미만이 법조인이 되는데, 그 나머지 절대다수, 그리고 여기에 타 학과 학생까지 사법시험에 매달리고 있어 대학교육의 과행을 부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중섭,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혁”, **고시계**, 제40권 제7호(1995. 7.), 226면 이하, 배중대, “법학교육의 개혁방안”, **법과 사회**, 제11권 제1호(1995), 6-7면 참조.

6) 송상현, 상개논문, 15면.

7) 예컨대 최성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2005), 고봉진, “기초법의 교수방법론 -체계로서 기초법과 의사소통으로서 기초법 강의-”,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호(2008), 이승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법강의”, **형사법연구**, 제20권제3호(2008), 고세일,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문답식 교육의 제안”,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2009), 박광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2008), 김동호, “법문서작성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법과 사회**, 제35권(2008), 홍대식, “모의재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과 사회**, 제35권(2008) 등.

저한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강의식 교수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방법으로 미국식의 몇 가지 교수법을 소개하면서 유용성을 강조하지만,<sup>8)</sup> 동시에 성급한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 언제나 지적된다.<sup>9)</sup> 그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상 문제나, 교육과정 및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sup>10)</sup>. 종전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제도로 인해 황폐화되었다고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도 새로운 변호사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과목으로서의 비중이 적거나 시험과목이 아닌 교과외 수업은 소극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sup>11)</sup>. 이것은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 정상화에 걸림돌로

8) 구재균,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도입과 법학교육방법”,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27권(2003), 94-95면은 전통적인 주입식 강의방법을 지양하고 사례연구·질의응답·토론식·세미나방식 등이 주류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권혁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방법”,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23호(2005), 77면은 사례중심의 문답식 수업(Socratic Method)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관례교재의 부재, 판결체계상문제점, 판례정보의 입수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선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 교육”, **영산법률논총**, 제2권 제1호(2005), 16면은 사례중심의 문답식 수업(Socratic Method)에 세미나식 수업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하고,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견”, **동아법학**, 제37호(2005), 310면은 사례중심, 문답식 교수법이 종래의 강의식 교수법을 대체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험 없는 교육자가 그런 방식에 의해 수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하는 점, 수업에 활용할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가가 해결할 과제라 지적한다.

9) 교수법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상당히 일찍부터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예컨대 이국운은 2004년 논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준비를 위해 하루속히 강의교재, 실험강의, 교수매뉴얼 등을 만들어낼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연구팀을 발족하고 학계, 민간, 정부차원의 동의와 지원을 얻어내자. 그리하여 소장학자들을 인도해 온 새로운 법학운동을 새로운 법학교육운동으로 전환시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사회**, 제26호(2004), 39-40면. 김동호도 2004년 발표된 논문에서 로스쿨에서의 법률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방법 개발, 교재개발, 교육과정 개선 등의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동호, “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 로스쿨도입을 앞둔 우리 법률교육의 반성과 과제”, **영산법률논총**, 제1권 제1호(2004), 87면.], 소크라테스식의 문답식 교수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해 본 경험은 없으면서 무분별한 도입을 경계하자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과연 현재의 교수법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까지 문답식 교수법이 검증된 교수방법으로 확고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지 못하였는데,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근거가 되는 철학이나 원리 내지 질문의 조직과 전개방법, 교수와 학습자 사이의 문답에 대한 태도나 규칙 등이 아직까지 해명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문답식 교수법의 실천사태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오히려 대단히 정상적인 현상에서 생각되는 것이다. 미국식 문답법은 문답법의 한 예일 뿐이므로 단순히 이것을 모방한다는 것은 문답식 교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10) 김중서 외 1,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민주법학**, 제37호(2008. 9), 김병주, “무너진 로스쿨”, **고시계**, 제53권 제3호(2008), 124-125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2)</sup> 그 외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과정에서의 문제점,<sup>13)</sup>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있어 학벌주의가 횡횡하였다는 지적,<sup>14)</sup>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수업을 실무가 출신 교수가 담당하게 되면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되고, 깊이 있는 학문적 연찬의 뒷받침 없는 상태에서 실무교육이 어설피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sup>15)</sup> 실무교육의 준비부족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이 기대한 바대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지 우려하게 되는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평가는 아직은 선부른 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또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성실하고도 부단한 노력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 III. 학부법과대학의 향후 전망과 과제

#### 1.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학부법과대학에 가져온 여파

혹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학부법과대학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분명하며,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법과대학이란 법과대학이라는 고명한 명칭을 사용할 자격조차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교수의 자존심도 현저하게 훼손될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우수교원을 흡수하였다는 현실의 논리적 귀결은 곧 실력 없는 교수만 남은 것이라는 자괴감을 낳아 교수의 학문적 권위가 엄청나게 실추될 것이며, 학부법과대학에 지망하는 학생의 수준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

11) 박광동, *supra* note 7, 74면.

12) 요시오 시오미,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일본에서의 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제”, 배성호(역), **영남법학**, 제11권 제1호(2005), 101면은 일본에서 신변호사법이 시행된 후 법학대학원 교육에서 “사법시험과목이 아닌 수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든가, 사법시험과목 이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학내의 정기시험에서 탈락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는 그 이상은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고 한다.

13) 정용상, “로스쿨 유감-국민의 로스쿨로 바로 세워야” **고시계**, 제53권 제12호(2008) 및 “로스쿨 도입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 제9권 제1호(2008) 참조.

14) 김동훈, “학벌주의에 물려버린 로스쿨 전형”, **고시계**, 제54권 제1호(2008), 269-270면. 이것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 지역균형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정원을 배정해 준 취지가 변호사 시험제도에 의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송희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 **고시계**, 제54권 제2호(2009), 131면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15) 김동훈, “로스쿨도입과 법학 생태계의 혼란”, **고시계**, 제53권 제10호(2008), 123-124면.

다.16) 그리하여 이 견해는 학부법과대학의 전망으로 ① 공무원 시험 대비(변호사 외의 경찰공무원, 변리사 등 유사법조인 배출) ② 프리로스쿨(로스쿨 진학준비) ③ 지역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있다.17)18)

위 견해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학부법과대학의 생존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하지만 학부법과대학의 전망과 진로를 어떻게 모색하여야 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학부법과대학이 법적으로 존립을 보장받고 있다 해도,19)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학부법과대학의 위상과 존립가치가 명백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학부법과대학의 전망으로 제시된 공무원시험대비반안 등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학부법과대학의 발전방안으로 타당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학부법과대학의 진로에 관한 기존 논의들

학부법과대학의 진로에 관해 그 동안 공무원시험 내지 로스쿨대비반안, 파라레갈(Paralegal)안 등이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 
- 16)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2006), 131-132면.  
 17) 이상수, 상계논문, 133-140면. 다만 논자는 위와 같은 방안은 모두 현실적이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신 지방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제언-지방대학의 생존비전으로 지역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자가 ‘지역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인간관계 구축, 봉사정신, 법적 문제해결능력, 학생활동을 교육공간으로 활용, 법률상담소 적극적인 운영,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교수의 역할변화를 강조한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18) 그 외 학부법과대학의 가능한 활로로 학부법과대학 간의 컨소시엄을 언급하는 견해도 있는데, 논자는 “이익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일에 대한 대학의 합심이 쉽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려는 까닭이 저마다의 대학의 위상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 지적한다. 임상혁, “중소규모 법과대학의 로스쿨 도입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6호(2004), 283면.  
 19) 일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대학이 기왕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를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종전에 이들 대학이 입학정원 안에서 받아들였던 우수인재들이 이제 학부법과대학으로 분산될 것이고, 이제까지 서울소재 법과대학을 지망하던 학생들은 서울 및 주변 학부법과대학으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이 제2의 ‘SKY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학부법과대학은 오히려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교원을 확충함으로써 명문법학부로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김철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수상”, **고시계**, 제53권 제3호(2008), 115면.], 그 동안의 상황전개에 이에 꼭 들어맞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외 학부법과대학에서 법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대단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부법과대학의 존립근거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학부법과대학을 공무원시험대비반 정도로 운영해도 족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개의 공무원시험에 공통된 시험과목- 헌법, 민법, 행정법, 형법, 민·형사소송법 등 -이 대표적인 법학과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목을 법학이 아니라 시험대비용, 수험학원식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시험과목 아닌 교과과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sup>20)</sup>

다음으로 로스쿨대비반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은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가진다. 논자에 따라서는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기초학문이면서도 법학의 인접학문이라 할 수 있는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통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별도의 간단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한다.<sup>21)</sup> 이 견해가 법학에 인접한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타당하지만, 법학 ‘전공’교과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균형 있는 제안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다른 논자는 대학 내에 시민교육의 방안으로 대학 학부차원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도 그런 목적으로 법과대학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장점은 비법학 전공자에게 법학을 교육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로스쿨 이전에 법학 외의 다른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여야지 법학전공 교육을 실시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로스쿨대비반안에서는 학부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는 물론, 학부법학교육의 존립근거나 가치를 기대할 수 없다. 로스쿨대비반안은 근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부법과대학의 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학부법과대

20) 학생의 진로로 공무원시험을 상정하여 그에 대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대학에서 별도로 고시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학부법과대학의 존립근거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상수, 상계논문도 학부법과대학이 공무원시험대비반으로 운영될 경우 종전 법학교육의 문제점-대학의 수험학원화, 교육의 황폐화-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결국 공무원시험대비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과대학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1) 부남철, “공직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오늘의 동양사상**, 제18호(2008), 173면-175면. 논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철학, 정치학, 경제학 통합과정(PPE)’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장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인간과 사회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 정치와 경제의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 정책결정과정의 이해 등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기반을 제공-. 그리하여 기왕의 학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전공자라도 자신의 전공과목을 공부하면서 수강할 수 있는, 고급교양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2) 이상수, 상계논문, 134면.

학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자격을 법학기수자에 한정하지는 않고 법학미수자의 비율을 입학정원의 30%까지 되도록 요구한 것은 다양한 전공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의도한 것이지 법학기수자라는 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23)</sup>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공교육을 한다 해서 그것이 곧 학부법과대학에서의 교육이 일반교양교과 수준으로 저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법학전공교과가 실무과정을 더 지향하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학부법과대학에서의 법학전공교육은 여전히 전공교육으로서의 강도와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sup>24)</sup> 로스쿨대비반안은 학부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법학전공교과 교육의 독자적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법학교육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안이다.<sup>25)</sup>

- 
- 23)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법학기수자와 미수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법학미수자가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 만에 법학의 기초와 이론, 실무까지 겸비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제도적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종전 ‘법과대학 4년 + 고시준비기간 + 사법연수원 2년’의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배출되었는데, 이제 ‘전공불문 학부교육 4년 + 법학전문대학원 3년’으로 종전보다 더 나은 또는 그에 상응한 법조인이 배출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이다.
- 24) 예컨대 형사법의 경우 학부법과대학에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을 한 학기씩 교육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대체로 형사법이라는 큰 틀에서 기초-심화-응용의 개념으로 교과를 구성하고 있다. 아무리 기초과정이지만, 형사법의 기초란 형법총론, 각론, 형사소송법의 종합적인 기초를 의미한다. 학부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법학미수자가 위와 같은 ‘종합적 기초’를 한 학기에 쉽게 이수할 수 있다면(이것은 법학기수자에게도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학부법과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종합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심화, 응용과정까지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다면, 오로지 그런 전제가 현실성 있고 타당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학부법과대학의 전공교과의 독자성은 부인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 25) 로스쿨대비반 안은 현실과 유리된 소박한 전망과 진단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순진하게 학부법과대학의 무용론,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법과대학이 속해 있는 그 대학의 차원에서 학부법과대학의 존폐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논거가 제시된다는 점이다. 학부법과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체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지만, 대학당국의 위와 같은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바이겠으나 근본적으로는 ㉠ 법과대학의 법학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무시하고 ㉡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끝으로 파라레갈안은 학부법과대학에서는 일반 교양교육의 수준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하되, 법률인접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특성화하자는 방안으로 이해된다.<sup>27)</sup> 이 견해는 학부법과대학 졸업생의 진로를 일단 법률인접분야로 상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현실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 중에도 이러한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는 예가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준(準)법조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고 이에 대비한 사설 교육기관 내지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정규 법과대학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준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그리 낮은 편이 아니고, 법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법과대학의 특성화에 있어서는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sup>28)</sup>

하지만 이상의 안들은 모두 법과대학이 하나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고유한 교육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부법과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뚜렷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정립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제도나 환경에 따라 한정된 역할을 찾아 적응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 여겨진다.<sup>29)</sup>

26) 그 외에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들의 2009년 입학전형의 실시결과 전국적으로 소위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점령하다시피 하였다라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법과대학이 향후 학생의 진로로 로스쿨을 상정하여 교육한다 하더라도 그 대학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동훈, *supra* note 13, 271-272면은 지방법학전문대학원조차 그 학교 법과대학 출신을 받지 못할 정도로 소위 ‘SKY’에 몰입된 학벌주의를 개탄하고 있다.

27) 서보환은 “로스쿨로 전환하지 않는 기존 학사과정의 법학교육단위는 법률과 인접한 특정분야의 교육으로 특성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컨대 부동산학과, 공무원양성학과, 미국의 Criminal Justice 전공 등).”고 진단한다. 논자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당해학교 법학과 학생들의 대다수는 현재의 사법시험과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서 일반교양교육의 하나로 법학교육을 존속하는 것은 몰라도 법조인양성과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로스쿨과 대학교육”,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21권(2004), 308-309면 참조.

28) 그러나 위 견해가 법률인접분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법학교육의 강도와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교양교육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견해가 학부법과대학 내지 학부단위에서의 법학‘전공’교육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취지라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로스쿨대비반안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진다. 학부법과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법학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교육내용을 가져야 한다면, ‘파라레갈’안은 이와 달리 직업교육기관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29)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법조실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에

### 3. 학부법과대학의 나아갈 길

학부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량과 지위를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만이 지상목표라는 인식은, 마치 건물 짓고 도서 확충하고 교수진을 보강하는 것 같은, 어쩌면 지엽말단적인 해법으로 학부법학교육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는 양 치부해버릴 우려가 있다. 학부법과대학의 전망과 발전을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아니면 파라레갈이나 하는 좁은 선택지 사이에서만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부법과대학의 구체적인 진로는 각각의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여건, 형편이 다양한 이상, 일률적으로 논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며, 이 글에서 이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학부법과대학이 어떠한 진로를 모색하든, 고등법학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의 법학교육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즉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여겨지므로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학부법과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학부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먼저 법학교육의 목표와 인재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교육목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부법과대학의 교육목표는 학부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부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등의 법학교육기관이 서로 상이한, 독립된 인재상과

---

진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해서 법조실무자격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으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여기에 응시횟수나 기간 등에 제한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인정받는 자격은 변호사 자격에 불과하지 법원이나 검찰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이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하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하여 학부법과대학은 당면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지도 않다. 학부법과대학이 배출하는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도전하는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가, 아니면 대학원이나 해외 유학을 나갈 것인가, 국제조직이나 공익적 사회운동에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학부법과대학의 직접적인 존립근거나 교육목적이 될 수 없다.

교육목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설치와 운영상 근거되는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등교육법(법률 제9356호, 2009.1.30 개정)은 ‘대학’의 목적으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8조).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으로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천명하고 있다(동법 제2조).<sup>30)</sup>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은 ‘대학원’을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분류하는데, ①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②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③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각각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동법 제37조는 ‘산업대학’의 목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동법 제47조는 ‘전문대학’에 대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보면, 각 교육기관의 교육목표라는 것은 결국 ‘인재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학의 성격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법과대학의 교육목표는 법조인 양성(법학전문대학원)도 아니요, 전문 직업분야 인력양성(전문대학원)도 아니며,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에 대한 계속교육(특수대학원)도 아니라는 것이다. 학부법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인격을 도야하고,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한다.’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법과대학의 존립근거와 사명은 일단 여기서 찾아야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법령은 학부법과대학의 존립근거를 의심한다든지 그 폐지를

30)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法曹倫理), 국내의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도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여전히 학부법과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의의 귀결로 변화된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설정된 법학교육의 목표와 과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분명하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기왕의 법학과 내지 법과대학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직접적인 역할을 인정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흔히 법조인 양성 내지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학부법과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듯이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학부법과대학의 교육목표 내지 존립가치가 법조인 양성 내지 배출에 있지 않다는 가장 단순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 2) 인재상

학부법과대학의 교육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부법과대학이 배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이 무엇인가 하는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sup>31)</sup>

학부법과대학의 인재상이 먼저 기초적인 교양과 전문적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인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라야 할 것임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학교육이 교육목표나 인재상을 생각할 때, ‘전문지식을 통해 법적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큰 잘못이라 생각된다. 학부법과대학에서 인재상을 검토할 때는 좀더 기초적인 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법과 법제도를 사후적인 분쟁해결수단의 측면에서만 보아왔지, 법이 한 사회와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사전적으로도

31) 김영철, “법학교육의 제도 및 내용의 개선방향”, 한국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직능의 발전과제에 관한 학술대회 발표논문(1984)도 법학교육의 목적을 바람직한 법조인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찾고 있다. 상계논문, 4면. 그리하여 유능한 법조인에 요구되는 능력조건으로 법적 지식, 법률적 사고능력(추론, 적용, 분석, 종합, 판단능력), 사회관리 능력을 들고, 또 인격조건으로 폭넓은 교양, 신뢰받는 인격, 올바른 가치체계를 들고, 또 환경적응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상계논문, 4-9면. 문재완, “로스쿨 제도도입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27집(2003), 50면 이하도 동일한 접근법을 보이는데, 논자는 세계화, 과학기술화라는 변화코드에 대응하여 교육내용도 ① 리얼 마인드를 키워주는 교육-“복잡한 사안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론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해 법률적 지식을 조사연구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문서나 구두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법률가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 ② 법률문장론, 법률문헌조사방법론의 조기이수, ③ 소크라테스식 문답식 교수법 적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왔다. 앞으로는 법적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입법이든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재, 법적 분쟁을 소송이나 고소고발과 같은 법률적으로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조정·중재·협상능력을 갖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도 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법과대학의 인재상으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창의성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지역과 세계를 무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상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sup>32)</sup>

## (2) 학부법과대학의 당면과제

### 1) 교육프로그램

학부법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33)</sup> 이하에서는 학부법과대학의 통상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보완이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가) 커리큘럼

세계화, 전문화 등으로 거론되는 법학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법학교육의 커리큘럼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법과대학 학생이라도 연관된 인접학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복수전공제도가 있으므로 굳이 학부법과대학 내에 이러한 교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법학 인접과목 이수 of 중요

32) 법률이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회가 발전하는데 올바른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가 법학교육기관에서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인재는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뒤치다꺼리’나 하는 전통적인 역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각종 법령과 사회제도의 합리화에 앞장서는 인재, 즉 분쟁의 사전예방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라 생각된다. 법학교육기관에서 법학전공교과 외에 정치·경제·사회·역사·문학 등 인접 학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편성하는 것, 봉사활동과 토론스피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33) 학부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표준적인 능력’을 하나의 정형화된 모델로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년의 법학전공교육을 마친 인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것인지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과 평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학(자체)평가 때마다 ‘취업률’이라는 지표가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단순성과주의 평가지표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성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모범커리큘럼과 연계전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또한 이를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가 필요하다. 법적 사고력 증진과 관련해서 말하기(토론·스피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히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정리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다.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서 법적 논증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여 가능한 논거를 발견하고, 예상되는 반대논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등 사고를 조직하고, 글이나 말로 다듬으며, 실제 다른 사람 앞에서 말로 설득력 있게 주장을 전개해보는 연습은 꼭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sup>34)</sup>

#### (나) 법학교육의 인프라 확충

교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크게 교육, 연구, 봉사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기초적인 업무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sup>35)</sup>

34) 그 외에도 교양 내지 전공 필수로 거론되지 않는 교과목으로서 기초법분야에 속하는 교과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초법분야는 변호사시험의 과목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학부법과대학에서도 외면받기 쉬운 교과목이 될 것이다. 학부법과대학이 법률기술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양이 있는 인재, 분쟁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기초교과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기초법 교과목의 교수일수록 사회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현실적응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는 점은 빠뜨릴 수 없다.

35) 예컨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교수법에 관해 ‘Teaching at Stanford (<http://ctl.stanford.edu/handbook.pdf>)’을, 예일대학에서는 교원매뉴얼로 ‘faculty handbook ([http://www.yale.edu/provost/handbook/faculty\\_handbook.pdf](http://www.yale.edu/provost/handbook/faculty_handbook.pdf))’을 제작하여 교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법학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일단 교수가 된 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수의 본분과 사명, 역할 등을 서술한 업무지침서(FACULTY MANUAL)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 연구, 대내외관계 등을 막론하고 연구관리방법, 표절기준설정, 성희롱방지, 논문심사, 학회활동범위, 국내외협동, 대외참여정도와 제한 등 각 방면에서 새로운 세대의 교수들에게 체계적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송상현, 상계논문, 15-16면.



① 교수분야

먼저 교수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36)</sup> 사실 법학교육에서만큼 교수학습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과서<sup>37)</sup>에 소개된 법틀이론 내지 판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법학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현실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8)</sup> 강의식 교수법은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단점

36)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를 보면,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원양성제도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초·중등교원은 교수법에 있어서는 제도화된 영역안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대학의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 외에 교원으로 배출될 것을 전제로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교원채용 사례에서는 교원의 교수능력을 검증하는 예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일 뿐 체계적으로 교수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는 공식화·제도화된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교원에 대한 강의평가제도가 시행된 것도 불과 수년전의 일인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수를 중심으로 수강생의 인원이 과다하다든지, 조교나 기타 물적 인적 시설이 빈약하다는 등의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크다.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훌륭한 연구자가 반드시 훌륭한 교수일 수는 없’(최대권, 상계논문, 85면.)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인 듯하지만, 막상 교수법을 개선할 필요나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자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37) 여기서 소위 ‘교과서’라는 것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만 읽으면 필요한 학습을 다하였다는 단순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폐해가 크고 부작용도 심각하다. 예컨대 인락사라는 주제를 보자. 대표적인 형법각론 교과서를 보면 불과 반쪽 정도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재상, **형법각론**(박영사, 2008), 22면 참조. 찬반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면, 이러한 교과서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몇 분간의 찬반토론도 작성할 수 없다. 인락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어떤 요건하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선행사례가 있는지, 어떤 찬반논거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예컨대 학습자는 조지 펜스, **의료윤리**(지코사이언스, 2007), 101면-135면에 소개된 정도의 내용을 읽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요약된 지식의 전달보다는 사안의 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쟁점을 소개하고 추가적인 독서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학습자 스스로 독서하고 사고하고 사고를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교육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38) 김재원, “한국로스쿨에서의 교육방법”, **성균관법학**, 제18권 제2호(2006), 145면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판례를 많이 소개한다거나 수업에서 판례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해서 그것을 미국식 판례중심수업방법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 하면 미국식 판례중심수업이 판례를 하나의 ‘화두’로 이해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판례를 권위적으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례문제식, 문답식, 문제중심학습법 등의 교수법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사례가 보고되는 예는 대단히 드물다.<sup>39)</sup> 법학교수는 스스로 자신의 교수법이나 내용을 반성하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연구·봉사분야 등

연구영역에 있어서 보면, 교원의 연구실적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 각자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기대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문헌과 판결, 법령의 인용법이나 판례평석의 체계와 방법 등에 통일성이 없는 점, 논문의 공정한 심사나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등에 있어 아직까지 후진적인 면이 많다는 점이다. 아직 연구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고 연구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심리절차의 성격이나 시효 등의 문제도 미해결인 것이 많다. 봉사영역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학회활동과 대외 참여활동의 허용정도나 제한 등이 문제가 된다. 그 외 교원의 연구·봉사활동과 학교당국 또는 소속대학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의 문제,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연구활동과 지적재산권의 문제, 교원의 육아 문제, 교원의 출신 학교·지역별 구성과 분포에 관한 문제, 교육·연구활동상 발생한 재해의 처리에 관한 문제, 교내치안과 질서유지에 관한 문제, 교내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 교명(校名)과 휘장·표지(標識)의 사용문제, 교육용 시설·기자재의 사용문제, 교원의 학내 봉사활동에 대한 보수지급문제, 교원의 대내·외 의사표현과 학교방침의 상충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상의 제반 문제점들이, 사실은 대학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것이 적절한 기관과 적절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로 주어진 ‘결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라 한다.

39) 실제 사례식, 문답식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한 경험의 보고사례로 고세일, 상계논문 정도가 보인다. 문제중심학습이라든지, 판례중심, 문답식 교수법의 성급한 도입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나마 그러한 학습법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소개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각자가 나름대로의 교수법을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수법이 찾아지는 것이므로 ‘성급한 도입을 경계’하는 주장이야말로 ‘성급한 주장으로 경계해야 할 것’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스텐포드대학의 교수학습센터에서 배포한 교수법자료(‘Guidelines for Effective Teaching’)는, ‘가르치는 데에는 왕도가 없으며 오직 교수의 목표와 학습자에 좌우되는 교수법만 존재하므로, 교수는 스스로 교수경험을 쌓고 교수경험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학사회를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다. 굳이 거창하게 플라톤이 천명한 법치주의, 법률의 지배와 같은 것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학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을 둘러싼 환경이 ‘규정의 무법지대(?)’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sup>40)</sup>

(다) 교과 외 교육프로그램 강화

먼저 법학교육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학생들에게 교과과정 학습을 위해 노트필기(메모·요약)하기, 리포트작성법, 프리젠테이션법, 법률문서작성법,<sup>41)</sup> 학습스케줄 편성 등에 관한 기초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필수최소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sup>42)</sup> 또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암기만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떠한 태도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함양하는 문제에 대해 대학은 그동안 대단히 무관심하였다고 여겨진다.<sup>43)</sup> 또 법학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40) 국내 대학의 규정을 보면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예컨대 어느 분야의 교수를 채용할 때 지원자격이나 조건을 명시하게 되면(‘영어가능자’와 같은 식) 그것이 도리어 특정시기에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염두에 둔 처사는 아닌가 하고 의혹에 찬 시선이 제기되고는 한다. 누가 무슨 필요로, 어떤 기준으로 교원을 채용하는가에 대해 합의처리(?)가 안되면 아예 교원선발이 취소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원선발에 관한 기존의 규정과 절차로는 잡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증거일 것이다. 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첩경이다.

41) 학습스케줄 짜기, 독서요약문, 제안(PRESENTATION) 내지 기획서, 리포트, 연구논문, 번역문 작성 등은 학생의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대학생활에 연관된 것이다. 그 외 판례조사보고서(Case Brief) 내지 판례평석 등의 작성은 법학교육에 직접 연관된 것이다. 전자는 혹 대학의 일반교양교과에서 배울 기회가 있다 해도 후자는 법과대학에서 교육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다. 판례조사보고서(Case Brief)의 작성방법에 관해서는 김재원, “미국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2006), 76면, 하재홍, “판례교수법을 위한 판례활용방안”, **경기법학논총**, 제9호(2009), 157면 이하 참조.

42) 대학 신입생이라면 입학초기에 대학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사실 전공이든 교양이든 어떻게 하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43) 대학은 학습자의 인격적인 태도요인에 관계된 것은 교육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도 그동안 학습자가 사법시험에 매몰되어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시범공부에 방해되는 요인이라 하여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신분으로서 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사법시험 준비학원에서 불법강의를 해 온 것은 후진양성(?)을 위한 것으로 하나의 관행이었다 치부하더라도 사법연수생이 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나오고 주거침입, 상해죄로 기소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다

있도록 법학에 있어 고전이라 할 것의 목록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학생봉사활동일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도 대학이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길러내는데 정규 교과과정 외에 어떤 교육적 수단이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논거를 수집하고 조직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길러질까 생각해 보면, ‘토론(debating)’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sup>44)</sup> 토론능력을 구성하는 종합, 분석, 비판의 능력은 법과대학 학생이 법학 전공교과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학부법과대학은 학교 실정에 맞는 표준적인 토론규칙을 보급하고, 정기적인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등 토론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sup>45)</sup>

---

는 것, 전관예우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소위 ‘스폰서’를 둔 판·검사의 문제 등의 사례는 바로 태도교육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인생은 최선을 다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폭력에 폭력으로 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는 평안히 살 수 없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하여야 한다”, “자선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의무이다” 등등의 명제에 대해 타당성을 논증을 해 보도록 한 결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알’이 ‘판단’과 ‘행동’을 이끌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44)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습득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독서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석에서 듣고 메모하고 요약하는 능력, 상대방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자신의 주장을 머릿속에서 조직하고 실제 말로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토론활동의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종합적인 것이므로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평소에 꾸준하게, 그리고 체계적인 연습과 훈련을 할 때 생겨난다.
- 45) 필자의 견해로는 그 외에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도의 교과 외 활동은 학부법과대학 수준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① 자기개발·관리, 학습법, 인문 및 과학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특강실시(매학기 14-15회), ② 토론스피치 훈련프로그램 : 대학 차원에서 국어 및 영어 등 외국어 토론대회를 개최하거나, 대학 당국과 협력하여 국내·국제 토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 ③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프로그램, ④ 현장체험(인턴)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⑤ 학생주도의 스터디 그룹 운영, 지원(특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⑥ 학생주도의 토론클럽 운영, ⑦ 학생 연구프로젝트 지원, ⑧ 학생학술지 발간 지원, ⑨ 멘토링 프로그램, ⑩ 상담프로그램(인성, 진로탐색, 학습수행상 문제점 등 해소).

(라) 시설적인 면 보완

교육이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학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기대할만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학부법과대학은 학생들이 학업과 기타 학교에서의 활동을 할 만하도록 교육시설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부법과대학에 필요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강의실, 강당, 도서관 및 열람실, 정보이용실, 그룹스터디실, 어학실습실, 휴게공간 등이다. 여기에 대학 당국이 기숙시설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통학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고, 또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식당, 휴식 및 체력단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수업이 있으나 없으나 학생이 학교에 나오고 또 학교에 남아 학업활동,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적인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학부법과대학의 발전전략

(1) 비전의 공유 - 설득

각 대학마다 현재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체평가를 정례화하고, 또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평가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개선을 요하는지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근거로 우선순위에 따라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을 수립한 다음, 구성원의 노력을 결집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렛대 - 법률상담실, 학술지, 토론활동(동아리)

1) 법률상담실<sup>46)</sup>

어느 대학이나 학생, 직원, 교수 등 학교 전 구성원의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상담수요에 대해 교내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상담실은 법학과 전공수업과 연계될 수 있고,<sup>47)</sup>

46) 이상수, 상계논문도 지방법과대학의 생존전략으로 지역화를 강조하면서, 그 실현방안으로 법률상담소를 적극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논자에 의하면 법률상담소는 학생간, 교수학생간의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학생의 봉사정신, 리더십 제고 등 복합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법률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한다.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문제해결은 법률문제해결능력의 저장소,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한다. 상계논문 139면.

교내봉사활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sup>48)</sup> 법률상담활동은 학생이 법률상담을 하면서 상담 받은 사실관계와 질문을 정리하고, 기초적인 법률정보조사활동을 전개하여 가능하다면 법적 결론까지 스스로 유도하도록 하고, 교수는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 내지 지도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험과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대 주민 및 기업에 대한 법률상담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부법과대학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학생학술지

법과대학들은 법학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논문 내지 판례평석, 번역문 등을 위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학부 법과대학의 학생들도 자치활동의 차원에서 학술지를 발간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본다. 학생학술지란 학생이 다양한 학업활동을 전개한 결과물을 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인데, 예컨대 독서동아리의 경우 독서토론의 결과물을, 토론동아리의 경우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 논제에 대한 토론대본을 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각 교과마다 리포트나 판례조사보고서 등 학생이 작성한 문건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발하여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부법과대학의 교수가 정례적으로 기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토론활동

법학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법적 사고력 증진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어떻게 하면 법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으며, 또 평가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사례중심 내지 문답식 교수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이 법적 사고력 증진에 더 낫다는 성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적 사고력의 증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법적 사고력 증진에 관한 논의는 모두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사고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한에

47) 예컨대 교과목의 명칭이 어떠하든 법률정보조사,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에 의한 법적 논증의 구성,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등을 교수하고 있다면, 교내에서의 법률상담은 학생의 법률지식 활용도 및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에 유용한 교육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8) 대학이 학생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면, 예컨대 농촌봉사활동 같이 법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봉사자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부법과대학이 이러한 성격을 갖는 봉사활동을 모색한다면 단연 법률상담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는 검증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사례중심 내지 문답식 교수법은 교과수업시간에 문답을 통해 이러한 ‘드러내기’를 의도하는 것이고, 법률문장론 내지 법문서작성에 관한 교과는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문서 작성을 통해 각각의 법문서가 가지는 양식이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적 논증의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해, 그리고 다양한 논증의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적 논증에 기초한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 특히 수사학적 전통의 변론술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나 학부법과대학에서나 모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모의재판(Moot Court, Moot Trial)경연대회라고 하는 교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항소이유서(appellate brief) 등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글로 쓴 것을 다시 ‘말’로 재구성하여 구두변론하고, 또 사안에 대한 예상치 못한 질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내지 기술까지 테스트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49)</sup>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해 온 바 없다. 현재 소송실무상 구두변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로 이제는 더 이상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술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모의재판’이라는 교과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교과를 통해 모의재판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소송문서의 작성을 통해, 또 구두변론을 통해 법적 논증이 전개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이나 학점 등 사정으로 주로 민·형사 재판을 위주로 소송절차의 진행을 연습해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수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50)</sup>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면, 토론활동이 학생자치활동으로서 평소에 자발적으로 전개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sup>51)</sup>

49)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정법(2007) 45면.

50) 홍대식, *supra* note 9, 139면은 영미식의 모의재판을 소개하면서 한국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될 ‘모의재판’ 교과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법률가의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는 분석력, 종합력, 판단력, 응용력, 창의력, 협동력, 명확한 의사전달능력, 의뢰인 및 동료와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함양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모의재판교육이 generalist뿐만 아니라 specialist로서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51) 토론활동이 법학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과 논증, 설득이 양자에 공통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과 합리적 논증과 토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면, 물론 그것이 토론활동 외의 방법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토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학생들이 평소 꾸준히 토론활동을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학부법과대학에서 학생간(토론

#### IV. 결 론 : 교수의 인식변화

많은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 미인가라는 사실로 인해 전국 상당수의 법과대학이 하루아침에 그 사회적 유용성을 상실한 듯이 법과대학의 축소·폐지를 운운하고 있다. 이제 학부법과대학은 그대로 침묵하고 있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학부법과대학의 존립필요성과 의의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구조조정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실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안팎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법학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관해 수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어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이 법학교육에 관해 제기되었던 제반 모순들에 대한 변증법적 귀결(?)인 것처럼, 모든 문제들이 신기하게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일을 기해 하루아침에 모두 해소된 것인 양, 의심스러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만이 법학교육의 주체이자 전부인양 치부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은 우리 사회가 선택한 하나의 실험일 뿐, 아직 성공을 단정할 정도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현재 상황이 이와 같다면, 학부법과대학에도 법학교육의 문제를 논할 자격과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개선책을 시행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부법과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주변부화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학부법과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위상과 사회적인 유용성 내지 필요성을 일체 외면하는 것이 되어서 옳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학부법과대학은 여전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하나씩 개선하는데 교수들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각 학부법과대학은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능력과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학부법과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주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대학당국을 비롯한 외부 사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sup>52)</sup>

---

클립간) 변론의 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법과대학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활동을 전개하도록 자극하고, 일정한 기초 교과시간을 통해, 또는 학교나 지역 차원의 토론대회(영미식의 ‘모의재판’ 방식도 무방하다)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토론능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법학교육의 목적이 법적 사고력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학부법과대학에서의 최종적인 완성은 이러한 변론의 대결장에서 전개되는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전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전통적인 교육자상을 충실히 고수하여 왔다고 한다면, 현대사회는 바로 교수 자신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교수 자신부터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태도로 법학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논자들이 법학교육의 미래와 관련하여 교수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sup>53)</sup> 이러한 지적들은 모두 학부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을 논할 때에도 ‘미인가’라는 역사적 사실에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수 스스로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54)</sup>

투고일 2010. 5. 17      심사완료일 2010. 6. 7      게재확정일 2010. 6. 14

- 52) 이러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 대학교육에서 전개되는 표준인증모델(예를 들면 공학교육인증제)은 참고할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염두에 둘 경우 먼저 법학교육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적인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학교육의 교육과정도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학교육은 내용과 성과의 측면에서 법학교육이수자의 능력을 표준화하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3) 예컨대 이상수, 상계논문은 지방법과대학의 생존전략으로 지역화를 제시하면서, 지역화 전략이든 무엇이든 대학교육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대학교수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교수들은 비전과 방법론, 전략을 공유하여야 하며, 법과대학에서(자기 담당 과목인) 법학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수업과 수업 외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학업수행활동관리, 리더십배양, 봉사정신함양, 법률문제해결능력제고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부법과대학이든 법학전문대학원이든 법학자나 법학교수들의 사명은 단순히 법률가가 되기 위한 필요한 법률지식이나 법소문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진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해결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외 박강우, “미국 법학교육의 과거와 현재”, **법과 사회**, 제29권(2005), 366-367면 참조.
- 54) 대학 안에 전공과목 중심의 할거주의나 과별주의, 교수 개인간 친소(親疎)관계를 이유로 한 줄서기나 눈치보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곱씹은 핑계거리로 탄죽을 걸거나 이상한 색깔론으로 치부하려는 속 좁은 근성,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태함 등이 지배하여서는 그 법과대학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봉진, “기초법의 교수방법론 -체계로서 기초법과 의사소통으로서 기초법 강의-”,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호(2008).
- 고세일,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문답식 교육의 제안”,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2009).
- 고옥천, “타이완에서의 법학교육”, 원문철 역, **영남법학**, 제11권 제1호(2005. 6).
- 구재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법학교육방법”,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27권(2003),
- 김동호, “법문서작성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법과 사회**, 제35권(2008).
- \_\_\_\_\_, “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 로스쿨도입을 앞둔 우리 법률교육의 반성과 과제”, **영산법률논총**, 제1권 제1호(2004).
- 김동훈, “로스쿨도입과 법학 생태계의 혼란”, **고시계**, 제53권 제10호(2008).
- \_\_\_\_\_, “학벌주의에 묻혀버린 로스쿨 전형”, **고시계**, 제54권 제1호(2008).
- 김병주, “무늬만 로스쿨”, **고시계**, 제53권 제3호(2008).
- 김영철, “법학교육의 제도 및 내용의 개선방향”, 한국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직능의 발전과제에 관한 학술대회 발표논문(1984).
- 김재원, “한국로스쿨에서의 교육방법”, **성균관법학**, 제18권 제2호(2006).
- \_\_\_\_\_, “미국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2006).
- \_\_\_\_\_,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정법(2007).
- 김중서 외 1,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민주법학**, 제37호(2008. 9).
- 김중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견”, **동아법학**, 제37호(2005).
- 김창록 외 4, “부산대학교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1권 제1호(2000).
- 김철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수상”, **고시계**, 제53권 제3호(2008).
- 권혁재, “법학 전문 대학원의 수업 방법”,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23호(2005).
- 김선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 교육”, **영산법률논총**, 제2권 제1호(2005).
- 문재완, “로스쿨 제도도입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27집(2003).
- 박강우, “미국 법학교육의 과거와 현재”, **법과 사회**, 제29권(2005).
- 박광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원광법학**, 제24권 제1호(2008).
- 배중대, “법학교육의 개혁방안”, **법과 사회**, 제11권 제1호(1995).

- 부남철, “공직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오늘의 동양사상**, 제18호(2008).
- 서보학, “로스쿨과 대학교육”,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21권(2004).
-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사회**, 제26호(2004).
- 이승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법강의”, **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2008).
- 임상혁, “중소규모 법과대학의 로스쿨 도입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6호(2004).
-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2006).
- 요시오 시오미,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일본에서의 법과 대학원의 현상과 과제”, 배성호(역), **영남법학**, 제11권 제1호(2005).
- 정용상, “로스쿨 유감-국민의 로스쿨로 바로 세워야-”, **고시계**, 제53권 제12호(2008).
- \_\_\_\_\_, “로스쿨 도입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 제9권 제1호(2008).
- 정종섭,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혁”, **고시계**, 제40권 제7호(1995. 7.).
-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 최성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2005).
- 홍대식, “모의재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과 사회**, 제35권(2008).
- Roy Stuckey 외, *Best practices for legal education*, Clinical Legal Educational Association (2007).

<Abstract>

## Challenges to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in Korea

Ha Jaihong\*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visions and tasks at college of law which failed to get approval of law school(school of law). What should be done in legal education was a hot issue, but became easily and completely forgotten as ‘law school system’ got attentions as an answer to that.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for approval of authority was keen, but a good many universities failed to get it. Now again, what is to done in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Some suggest that now colleges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But it is not enough to meet social demands for college of law, as a responsible institute for legal education. College of law should make up and execute growth plan voluntarily and independently. The idea that college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could not be a sufficient one, because it forgets social importances and duties of college of law. Colleges of law, including it’s professors and faculties, are required to show more interests in improving skills for legal education, and infra-structural surroundings of legal researches and outside workings, to establish adaptive strategies for successful execution of growth plan. Professors at college of law themselves should perform a crucial role to stimulate meaningful achievements in depressed campus, for example, sharing visions for growth plan, running legal counselling clinic, supporting students to form debating teams and issue journals of law, etc.

Key words: legal education, law school, legal educational method, legal clinic, debating

---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Kyonggi university, attorney at law.